

2022년 중앙동 자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2. 9. 5. ~ 9. 7.(3일간)
- 감사범위 : 2020. 3. ~ 2022. 7.(2년5월)
- 감사반 : 감사계장 등 4명
- 감사중점
 -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사회복지, 주민자치 분야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 ▶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II 감사결과

○ 총괄

(단위 : 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회수	추급	반환	세입조치	계	경장계	훈계	주의
11건	4건	7건	-	3건 (○○)	1건 (○○)	-	-	2건 (○○)	3건 (○명)	-	-	3건 (○명)

○ 수범사례(우수사례)

- ▶ 친절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 ▶ 정성 담은 밑반찬 지원 사업

III

지적사항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원)	신분상
계	11건	시정 4 주의 7	회수 1 세입 2 (○○○)	주의 3 (○명)
1	자동차세 등 예산절감 노력 소홀	주의		
2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	
3	물품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 첨부	주의		
4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시정	세입조치 (○○○)	
5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리 소홀	주의		
6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주의		
7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 소홀	주의		주의 (○명)
8	인감도장 규격 미준수 및 오발급 인감 파기 미이행	주의		주의 (○명)
9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접수처리 부적정	시정	세입조치 (○○○)	주의 (○명)
10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주의		
11	주민등록증 발급 및 파기처리 부적정	시정		

IV

지적사항 요약

1 자동차세 등 예산절감 노력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 ‘세출예산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또한,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항에 따라 자동차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매년 1월(16일~31일) 기간 중 연납 신청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동에서는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 10% 감면 없이 지출하는 등 공공운영비 집행 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 「익산시 여비조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우리 시 2020년도 및 2021년도 예산편성 자체 기준경비 결정내역에 따르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매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자에게 월액여비 전액(170,000원)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관외 출장일수는 산정하지 않음)

▶ 그러나 중앙동에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회계처리 미숙으로 출장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명(총 ○○○원)에게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3 물품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 규정」 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요령)에 따르면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2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용(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담당공무원용(별지 제2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중앙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구입’ 등 ◇건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담당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해야 할 청렴이행서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 이용 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 조치 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중앙동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감사일 현재까지 원인 미상의 고정 잔액(◆◆◆원)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세입처리 등의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리 소홀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식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 통장은 겸직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중앙동에서는 ■■■■년 개시 1개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일 지연하여 공개하였고, 새로이 위촉된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지역 통장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을 겸직하는 등 주민자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6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고,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여 1개월 이내에 장애인단서 등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해야 함.

▶ 그러나 중앙동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일이 도래한 ○○○에게 통보기한을 ◎일 지연하여 안내하였고,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에 대하여 ▽일 지연하여 촉구하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7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증명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출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에서 보관하되, 위임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접수인 등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위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등 주요한 흠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보완토록 하여야 했으며, 제출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에서 보관하되, 재사용되지 않도록 위임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 접수인 등을 날인 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해 보관하여야 했다.

▶ 그러나 중앙동에서는 ★건의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하면서 위임일자, 위임 사유 등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위임장에 대해 보완 요구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그대로 수리하였으며, ◇건의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시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신고인, 대리인 인적사항 및 무인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인감증명을 발급하였고, □건의 인감 위임장에 접수인 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8 인감도장 규격 미준수 및 오발급 인감 파기 미이행

- 「본인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영의 명의를 가족 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규정에 의한 성명 외에 문자나 부호, 그림 등의 표현을 수리할 수 없으며 다만 성명의 인식을 훼손하지 않는 테두리와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온 글자인 “印, 章, 信”도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음.
- 또한, 같은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증명이 발급되었으나 교부되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해당 열을 비워두고 비고란에 ‘미교부’라고 기재하고, 발급오류나 발급 후 취소에 의해 교부되지 않은 인감증명서는 신청인의 면전에서 즉시 파기하며, 잘못 발급(훼손 등)된 인감증명서는 보관하지 말고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중앙동에서는 성명 외 “육군”, “●” 등의 기호, 숫자 등이 기재된 도장을 인감으로 ◎건 등록하였으며, ☆건의 인감 증명서를 위임발급 처리하면서 오류 발급에 따라 교부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수입증지 수수료 결손처리한 후 수입금 납입서류에 그대로 첨부하여 보관하는 등 인감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9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접수처리 부적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제1항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및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및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이때,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시 동의서로 같음),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조사의회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회서 등을, 금융회사는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금융회사 내부감정평가 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등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물건지 건당 300원으로 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당해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첨부하고 소인(또는 인증기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중앙동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미작성한 ▲건에 대하여 그대로 수리하여 발급하였고, 열람발급 수수료를 징구하고도 신청서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는 등 전입세대 열람 접수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10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에게 보내야 하고, 이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전입신고 수리 후에는 통리장 사후확인을 통해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통리장이 비거주로 확인한 경우 담당자는 사실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적정 업무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 그러나 중앙동에서는 통리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서에 거주여부 또는 세대주 확인을 누락하였음에도 재확인 또는 보완요청 없이 그대로 수령하여 보관하였고, 통리장이 전입자 거주여부를 비거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도 별도 조치 하지않은 사실이 있음.

11 주민등록증 발급 및 파기처리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8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시행령 제43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하고,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중앙동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수급자)임에도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관외주소지에 거주하는 자가 재발급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하지 않거나, 재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자의 주민등록증을 회수처리하지 않았으며, 습득 안내통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민등록증을 파기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부적정 처리한 사실이 있음.

▣ 특수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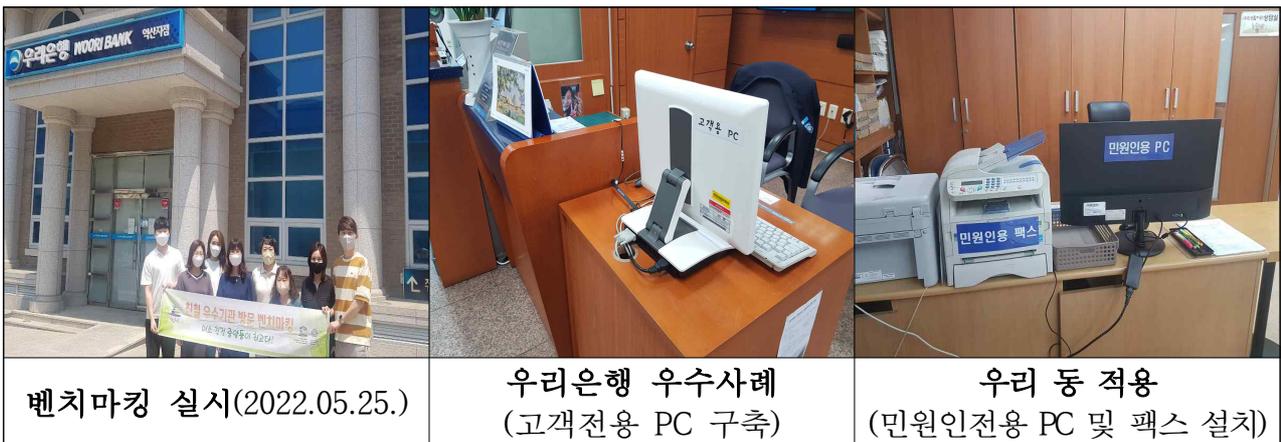
친절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 사업 개요

- 소통과 공감행정 추진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 고품격 친절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추진 내용

- 친절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시민감동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 ▶ 대상 및 시기 : 전 직원, 분기별 1회
 - ▶ 내용 : 관내 친절기관 및 금융기관 벤치마킹 후 친절 우수사례를 우리 동 실정에 맞게 적용



■ 기대 효과

- 시민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 등 다양화된 민원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 소통과 공감행정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정성 담은 밑반찬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여관, 고시원, 밀집 주택가 등에 거주하여 조리환경이 열악하고 노령과 질병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1인가구에게 밑반찬을 지원하여 균형있는 영양 관리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완화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 1인 청장년 가구, 노인·장애인 가구

■ 추진 내용

- 추진방법 : 매주 1회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전달
- 복지통장 및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의 추천을 받아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들의 선호도와 영양을 고려하여 국을 포함한 반찬을 지원하고 안부 확인 및 말벗 지원



■ 기대 효과

- 정기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 지원하여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해소
- 매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독거가구의 고독감 해소와 정서적 안정 도모